

공판기일연기신청

사 건 20 O D O O 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 O O O

귀원에 계속 중인 위 사건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, 20○○. ○. ○.에서야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기록등사 및 검토를 위하여 부득이 변론기일의 연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.

20000. 0. 0.

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○ ○ ○ (인)

○ ○ 지 방 법 원 형 사 항 소 제 ○ 부 귀 중

				₩ 대한법률구조공단
제출기관	사건계속 법원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270조	www.klo
신 청 인	・재판장(직권) ・검사 ・피고인이나 변호인	제출부수	신청서 1부	
불복절차 및 기간	・이의(형사소송법 304조, 항고불허 : 형사소송법 403조) ・기간에 대한 명시규정 없음			